

근 로 계 약 서

	갑	기관명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대표자	이정재	사업종류	보건업
	을	성 명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핕	주 소				사원번호	{{사번}}	

"갑"과 "을"은 상호간 병원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로계약 기간) "을"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이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조(직 군) "을"의 직군은 일반직 이다.

제3조(직 급) "을"의 직급 및 호봉은 {{급호}} 이다.

제4조(소속/근무장소) "을"의 소속은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u>간호부({{부서}})</u>이며, 근무장소는 <u>{{근무지}}</u>이다. 다만,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을"의 근무지 또는 근무부서(담당 직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동의한다.

제5조(담당직무) "을"의 담당 직무는 {{**직무**}} (으)로 한다.

제6조(근로시간 등)

- ① 근무형태: "을" 근무형태는 _ 교대근무 _ 이다.
- ②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근로기준 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구분	주간조(Day)	저녁조(Evening)	야간조(Night)	
시업시각	06:30	14:30	22:30	
종업시각	15:30	23:30	07:30	
휴게시간	11:30 ~ 12:00 / 15:00 ~ 15:30	17:00 ~ 17:30 / 23:00 ~ 23:30	02:00 ~ 02:30 / 07:00 ~ 07:30	

※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근무형태 및 부서특성상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시간을 통변경할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항은 취업규칙 등 에 따른다.

③ 휴게시간

- (¬)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중 60분의 휴게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 (ㄴ)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표에 명기된 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
- (c)교대근로자 중 간호사(병동)는 업무 특성 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조기퇴근을 목적으로 "을"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근무시간 마지막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다.
- ④ **시용기간**: 「중앙의료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해 "을"은 신규로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 가을 가진다. 시용기간 동안 시용평가를 통하여 "을"이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



제7조(임 금)

- ① 정기 임금: "갑"은 "을"에게 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5일에 "을"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하며, 구체적인 임금의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단, 임금 인상률, 승급, 승호에 따라 일부 수당의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 (ㄱ) 통상임금

순서	구성항목	지급 금액	계산방법	지급시기	설명
1	기본급	{{기본급}}원	정액	매월	◆'을'의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 급여
2	호봉수당	{{호봉수당}}원	정액	매월	◆'을'의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3	조정수당	{{조정수당}}원	정액	매월	• '을'의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직무수당(직접)	{{직무수당(직접)}} 원	정액		• '을'이 보건복지부 면허를 소지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 '을'의 근무부서의 위험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설명}})
5	직무수당(지원)	{{직무수당(지원)}} 원	정액	매월	◆'을'의 직무 중 특정직무 수행 시에 해당하는 수당
6	급양수당	200,000원	정액	매월	• '을'의 생활을 지원(식비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7	통근수당	36,500원	정액	매월	• '을'의 생활을 지원(교통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
8	자녀양육수당	125,000원	정액	매월	• '을'의 자녀양육/가계보조 등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
9	복리후생수당	84,000원	정액/정률		◆ 정액) '을'의 복지증진, 장기근속우대 등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급여테이블상 1-3년 미만에 지급하는 금액 ◆ 정률) 기본급과 호봉수당의 28.525%. 단 1년 미만자는 「중앙의료원 일반직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 리 지급할 수 있음
합 계 {{-		{{총합}}원			

(ㄴ) 비통상임금

순서	구성항목	지급 금액	계산방법	지급시기	설명
10	일반수당(정률)	첨부서류 참조	정률	1,4,7,10 월 제외	 ↑ 기본급과 호봉수당의 71.475% ◆ 단 1년 미만자는 「중앙의료원 일반직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음 ◆ '을'의 통상의 생활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
11	명절수당(정률)	첨부서류 참조	정률	1,10월	◆'기본급과 호봉수당의 연간 50% (1년차 기준) ◆'을'의 근속년수에 따른 정근률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으로
12	자기계발수당(정률)	첨부서류 참조	정률	4월	「중앙의료원 일반직원 보수규정」을 준수함
13	하계휴가수당(정률)	첨부서류 참조	정률	7월	◆ '을'의 명절(설, 추석)에 따른 생활을 보조하거나 역량향상 을 위한 보조, 하계휴가를 위한 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
14	가족수당(해당자)	배우자 2만원, 자녀 1만원	정액	매월	◆ '을'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의 숫자에 따라 지급하 는 수당

※ 상기항목 중 일반수당(정률), 명절수당(정률), 자기계발수당(정률), 하계휴기수당(정률)은 당월 1일부터 보수지급일까지 개근하고 보수지급일 현재 재직근무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함. 단, 시용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②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 (¬) "을"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갑"이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신청 절차에 따른다.
- (ㄴ) "갑"은 "을"에게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을 <u>익월 10일에</u> 통화로 "을"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지급)하며,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의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8조(복리후생)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명절수당(정액)과 하계휴가수당(정액)을 지급한다. 명절수당(정액)은 명절 해당월, 하계휴가수당(정액)은 7월 지급한다. 명절수당(정액)과 하계휴가수당(정액)은 보수 지급월 1일부터 보수지급일까지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보수 지급일 현재 재직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휴 일) "갑"은 "을"이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주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다만, 통상근로자의 유급휴일 은 일요일로 하되, 교대근로자의 유급휴일은 근무스케줄을 작성 시에 부서장이 특정 요일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휴 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기타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1조(복무규율 및 의무) "을"은 「중앙의료원 직원 복무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직을 원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되 「중앙의료원 사무 인계인수 규정」 및 "갑"이 정한 바에 따라 인계인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근로계약 해지) "갑"은 「학교법인 동은학원 정관」에서 정한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되거나 「중앙의료원 직원 복무 규정」,「일반직원 징계 규정」, 부속 서울병원 취업규칙 등 중앙의료원 및 부속병원에서 정한 복무 등 관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3조(기타) 이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의료원 및 부속병원의 제반 규정 또는 「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법령에 따르고,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 근로계약서 2부 중 1부를 수령하였음을 본인 서명으로 확인함. (서명날

(| 0 = = = /

"갑" 사용자 : 순천향대학교병원서울병원장 이 정



"을" 근로자 :

(인)